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7
----------	-----

제출년월일 : 2001. 5. 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일선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추천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예·체·능 특기장학생에 대하여 선발요건을 구체화하여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학생 자격요건중 성적평정을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석차율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으로 적용(안 제2조제1호)
- 예·체·능 특기장학생 자격요건중 확인이 불가능하고 애매모호한 선발요건을 구체화하여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2호)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할이내에 해당되는 자, 재학생은 이전학기 재학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3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
-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학기초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시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124
입안자	총 무 과 장	홍 덕 기
	시 정 담 당	김 규 범
	담 당 자	김 영 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1. <u>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 의 50이내인 자</u> 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u>	제2조(장학생의 자격) 1. <u>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할이내에 해당되는 자, 재학생은 이전학기 재학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3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u> 2. <u>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학기초를 기준으로 3년이내 시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u>